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가석방 제한〉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38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김승원 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5. 1. 20.
3. 회부일 :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균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¹⁾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을 하지 아니하려는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가석방의 제한)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을 하지 아니한다.

1) 「균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미수범)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9조(반란 불보고)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 가석방은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형법」 제72조²⁾).

○ 가석방 제도의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행상이 양호하고 개선(改悛)의 정이 현저한 자를 그 형의 집행종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무용(無用)한 구금의 연장을 피하고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은혜적 차원의 형사정책적 처분임.

□ 한편, 현행법 제2편 제1장에 규정된 “반란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반란(反亂)”(제5조)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³⁾로 그 자체로 위험성 및 위헌성이 현저하게 크고, 같은 장에 규정된 관련 범죄, 해당 범죄의 미수범·종범 등도 기본적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반란죄 및 관련 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은혜적 조치인 가석방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음.

2)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 반란중요임무 종사자 등(제5조제2호)의 법정형⁴⁾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 및 양형에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하는 경우 우리 형사법체계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서 수형자가 자 연사하기 전까지는 영구히 수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⁵⁾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 「형법」 제72조⁶⁾는 무기징역을 가석방 가능한 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 적 종신형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⁷⁾

□ 국방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려는 입법취지

4) 「군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몰타 등

6)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 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 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7)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 대해서는 ①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형벌로 도입될 경우 생명권을 보장 할 수 있고, 사형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형집행 현실에서 이미 사형 선고가 가석방 없는 종 신형과 동일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찬성의견과, ②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하고 구금함으로 써 수형자의 인격을 박탈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수형자의 교정교화 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배 치될 수 있어 사형제보다 더욱 잔인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되고 있음.

에는 공감하나, 가석방 결정 여부는 수형기간 중 수형생활 태도, 교정교화 정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형자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범죄 유무는 판단요소로 보기 어려움에도 균형법상 반란죄라는 특정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만으로 가석방 심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목적·취지 및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3